

# 사회계약론 한판정리

	홉스	로크	루소
계약 중시 가치	생명 보호	재산 보호	자유 보호 → 자연 상태 중 일부
자연상태	전쟁상태 (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 O) - 공통 권력 X - 정의/부정의 X → 유물론 - 이성 발휘 가능 → 계약 가능한 원인 (전쟁상태 원인: 무제한적 자유 + 평등한 개인의 능력)	불완전한 평화 상태 - 사회 상태 (국가 상태 X) - 공통 법률/권력 X - 개인에게 집행권, 처벌권 O - 이성의 오류 가능성 존재 - 공통의 재판관/집행관 X	평화 상태 → 1. 평화로운 상태 2. 농업, 아금술 발달 3. 사적 소유 등장 4. 불평등 & 예속 발생 (= 전쟁상태) (지배)
자연적 평등	정신적·육체적 평등 O	권력적·권리적 평등 O	등가적 자유 → 평등 O
인간관	성악설 → but, 무제한적 권리	성무선악설 → 소유권 포함	성선설 자연적 권리는 존재
자연권	O (불안정)	O (불안정)	언급 X
자연법	O 불이행의 공포 존재 (불의는 아님) - 이성의 원리, 규칙 - 타산적 법칙 - 제 3원법 1. 평화 추구 2. 자연권 (= 모든 권리, 자유*) 포기 3. 규약 준수  *생명 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만 포기 가능 +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자유만 포기 가능	O 1. 기본적 자연법 for. 노동, 편의, 피해, ... - 보편타당한 규범 (모든 만민에게 적용) - 이성으로 인식된 하나님의 명령 (feat. 기독교) 2. 도출된 자연법 - 기본적 자연법에 의거 - 자연권에 근거한 수단적 법 - 자연인의 행동 규제	△ - 학문적 논란 多 → 출제 확률 少  - 자연법 비판 but, 일반의지로 자연법 대체 O (feat. 푸펜도르프, 그로티우스)  - 완전 폐지 주장 but, 상위대체법 주장
=규범?	△ (도덕 규범 X, 규범성 O)	O	
소유권	X + 소유권은 계약 이후 생성	O 명시적 동의 U →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의	X (명시적 소유권 X)
공통권력	X	X 목적적 동의 → 법에의 충실성에 대한 동의	X
규범	X	O	X
권력	권력자 선출 X, 만들 O (→ 리바이어던) → 주권자와 상호계약 X → 시민과 상호계약 O	권력 분립 집행권, 처벌권만 양도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함	정치 조직에 절대 권력 부여
자연권 양도	대부분 양도 - 양도할 수 없는 권리: 1.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 2. 생명에 대한 저항권 3. 신체의 손상을 피할 권리 4. 감금에 대한 저항권 → 생명 침해권 → 저항권	자연적 권력 일부 [조건적] 양도 - 집행권, 처벌권 양도 (자연권을 집행할 권리) - 생명·자유·재산의 권리 양도 X  → 계약 반대자 → 전쟁 상태로 돌입 (중요도 ↓)	계약 전 모든 권리 전면 양도 - 계약 이후 권리 양도 X  (사적 인격) (공적 인격) ** 자연적 자유 포기 → 사회적 자유 확보
만장일치	모든 백성이 참여	참여자만 참여	참여자만 참여
계약시		모든 사상이 만장일치로 계약 진행	공익 실현 의지
법률 제정시	- (리바이어던 단독 제정)	X (다수결)	X (다수결)
주권자 설립	X (다수결)	주권자 = 인민 → 설립의 개념 X	
주권	리바이어던 (절대군주) [분할 & 양도 개념 X] *예외 존재 (주권자 주권 포기시 자연 상태로 복귀)	인민 → 주권 + 신탁위반 여부 결정권 소유	인민 → 일반 의지 행사 [그 이상 그 이하도 X] [정부(X) → only 주권에 의한 법의 집행 대행]
최고권력	리바이어던 → 절대 군주이자 국가 구성원 그 자체	입법부 & 인민 자의적 변경 불가능 (인민 → 입법부 제어 가능)	일반 의지 (≠ 개인 의지의 총합) 전체 의지
저항권	△ 국가에 저항 = 자신에 대한 저항 - 생명에 대한 저항 O - 감금에 대한 저항 O - 정부(인민)에 대한 저항 X - 불양도 권리 침해시 저항 O	O - 자연권 미보호(신탁 위반)시 폭력적 저항권 O → 적극적 저항권 - 권력 장악 시도시 정부 해체 (≠ 공동체)	△ (저항권 X, 저항 O) - 주권 찬탈시 제한적 저항 O - 계약, 국가 자체에 적극적 저항 X 수사적 권리만 지님
정부의 역할	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 구성원 유지	안정적이고 확실한 보장 아래에 실현되는 자연권 유지 → 화폐 등장 → 소유권 보장 (=한계 극복)	주권자의 일반 의지 구현 특수 의지 가능
정치체제	절대 군주정 & 코먼웰스 [국가] - 국가기관 분리 반대 - 개인의 하나된 합의체	3권 분립 (입법, 행정, 집행) - 대의 민주주의 - 입헌군주제	공동의 상위자 (feat. 일반 의지) - 직접 민주주의 - 군주정/귀족정/민주정 → 공화체제 인에서는 모두 가능
법률 제정 권력	절대군주(리바이어던) - 절대군주가 제정한 법률에 절대적으로 복종  입법부 선출 → 다수결	1. 입법부 - 권력 이전 X, 위임 O - 자의적 제정권 소유  ** 인민에게도 간접적 법률 제정권 존재 - 입법권 위임, 정당성 부여 역할만	인민 - 분할 & 양도 X  ** 인민 = 입법권자 ≠ 입법자 ** 입법자: 입법권 X, 헌정 체제 구성만 역할